

여성의 참정권과 법적인 평등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부터 보장되어온 서구 사회에서의 여성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여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참

남녀평등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천 5백 3개의 사례중 남성은 교재에 나온 비율이 60.8%인 반면

한국 여성정책 “걸음마단계” 교과서 性차별부터 고쳐야

한국여성정치문화研세미나 美교수 지적

고할만한 본보기가 될수 있다.

한국여성정치문화 연구소는 14일 「신한국과 여성정책」이라는 세미나를 열어 서구의 여성정책을 검토하고 신한국에서 수립되어야 할 여성정책을 점검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탁아, 여성복지등 주제별로 나누어 「서구민주국가에서의 여성정책」이라는 발표를 한 로버트 달시교수(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정치학)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90년 아동양육발전기금법을 통과시켜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2백5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정부가 탁아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 또는 교회등의 탁아소를 지원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윤락행위에 대해서는 윤락녀뿐 아니라 남성 고객도 처벌한다. 89년 오리건주는 윤락행위를 한 고객의 차를 압류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디트로이트 하트퍼드 시 카고 워싱턴 DC 등에서도 이 법을 채택했다.

또한 80년에 「가정폭력법」이 제정되어 매맞는 아내를 위한 보호소가 전국에 1천 5백여개소 설립되어 있으며 버지니아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매맞는 아내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남편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여성은 그 남성뿐 아니라 이를 방조한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다.

한편 87년부터 91년까지의 우리나라 국민학교 3~6학년 윤리와 사회교과서 내용을 분석한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대 데니스 하트교수(정치학)는 『교과서내용에서의 성적인 분리와 차별이

여성은 39.2%였으며 21.6%의 남성은 리더십의 지위에 있지만 여성은 5.6%만이 그렇다.

하트 교수는 『행동적이고 지적이고 일하고 가족생활을 하는 모든 상황에 남녀를 동등하게 묘사하는등 성차별없는 교과서제작을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